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병역의무부와 통지서 대리수령자 전달 의무 태만시 처벌완화 등〉
■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481호)

2024. 11.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류 승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대식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10. 2.
3. 회부연월일 : 2024. 10.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 또는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예비군법」에 따른 대리수령인의 전달의무는
행정절차적 의무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위헌이라고 결정
한 바 있어, 「병역법」상 대리수령인의 전달의무 태만에 대한 제재
또한 형평성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리수령인이 전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완화하고, 병역의무자의 통지서 수령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500만 원으로 상향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5조 및 제95조제5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①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 현행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안제85조),
- ②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병역의무자 대신하여 수령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 현행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처벌 수준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5조제5항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5조(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 무태만) 제6조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5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 거부)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라 송달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과태료) ① ~ ④ (생략)	제95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현행	개정안
<신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⑥ (생략)	같음) ⑤ 제6조제5항의 세대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된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그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⑥ -----제5항----- ----- ----- -----.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 헌법재판소는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대리 수령한 사람이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통지서를 전달해야 하는 의무¹⁾를 행정 절차적 협조 의무로 보아,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²⁾하도록 하는 규정은 그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비례 원칙에 위반되므로 위헌³⁾으로 결정한 바 있음.

1) 「예비군법」 제6조의2(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④ 제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은 세대주 등은 소집통지서를 지체 없이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2) 개정 전 舊 「예비군법」 제15조(벌칙) ⑩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또는 파기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헌재 2022. 5. 26. 2019헌가12

<예비군법 제15조제10항 현재 위헌결정 내용>

심판대상조항은 예비군대원 본인이 부재중이기만 하면 예비군대원 본인과 세대를 같이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족 중 성년자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데, 이는 예비군훈련을 위한 소집통지서의 전달이라는 정부의 공적 의무와 책임을 단지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이것이 실효적인 예비군 훈련 실시를 위한 전제로 그 소집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도 지나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중략) 심판대상조항은 행정절차적 협력의무에 불과한 소집통지서 전달 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등의 행정적 제재가 아닌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형벌의 보충성에 반하고, 책임에 비하여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하고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

<현재 위헌결정에 따른 예비군법 처벌조항 개정전·후 비교 >

행위유형	개 정 전	개 정 후
소집통지서 전달의무자 전달 의무 태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舊 「예비군법」 제15조제10항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예비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집통지서 대리 수령인의 통지서 전달 의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병역법」상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 수령인의 통지서 전달 의무 태만 시 현행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벌을 적용하는 대신 행정질서벌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해당 조문의 위헌적인 내용을 제거하려는 것으로 개정안 내용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은 병역의무부와 통지서 수령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 현행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유사한 사례인 「예비군법」 상 소집통지서 수령의무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 기준이라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처벌 기준 조정으로 보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예비군법·병역법 처벌조항 비교>

구분	예비군법	병역법	
		현행	개정안
소집통지서 전달의무자 전달 의무 태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집통지서 수령의무자 수령 거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다만, 안 제95조제5항에서 ‘세대주 등’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을 통칭하고 있는데 병역의무부와 통지서 대리 수령이 가능한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 모두를 열거하거나, ‘세대주등’으로 약칭을 부여하여 과태료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 제85조, 제95조제5항은 병역의무부와 통지서 수령 의무자 및 대리 수령인이 해당 규정을 위반했을 시 처벌을 예정

하고 있는 조항이므로 법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칙
으로 개정안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는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어
보임.

- 국방부 및 병무청은 대리수령인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전달 의무
태만 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병역법」상의 위헌 요소를 해소
하는 한편, 병역의무자의 병역 기피 방지 측면에서 통지서 수령
거부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07